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-6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: 2023. 5. .

제출자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기존 조례에 불분명하게 표현된 용어 및 내용을 명확히 정비하고, 사업의 위탁운영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노인급식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조문의 내용이 분명해지도록 조문의 제목 및 내용 수정

: 제3조제1항, 제5조제1항

나.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히(운영자⇨급식기관) 하고, 공개모집 외 불필요하게 규정된 우선선정 내용 삭제 : 제6조, 제7조

다. 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의 위탁 규정 추가 : 제8조

#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

- 「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」 제7조(건강증진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3. 4. 20. ~ 5. 10.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동의
- 3) 새마포담당관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원안동의
- 4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5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- 6)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(2023. 5. 16.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(이하 ‘구청장’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”를 “이 조례의 노인 급식 지원대상은”으로, “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”를 “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‘구청장’이라 한다)이 선정한다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운영)”을 “(급식방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”를 “급식방법은 지원대상자”로, “급식을 지원할”을 “할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운영자 모집)”을 “(급식기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5조에 따라 노인”을 “노인”으로, “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”를 “급식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운영자는”을 “급식기관은”으로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급식기관에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 중 “운영자”를 “급식기관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제9조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사업의 위탁) ①구청장은 노인급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포구 출연기관, 비영리법인,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구청장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대상) ①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(이하 ‘구청장’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5조(운영) ①<u>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, 생활상태,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6조(운영자 모집) ① <u>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. 다만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, 「노인복</u></p>	<p>제3조(지원대상) ① <u>이 조례의 노인 급식 지원대상은 -----</u> ----- ----- <u>사람으로</u>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‘구청장’이라 한다)이 선정한다.</u>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급식방법) ①<u>급식방법은 지원대상자-----</u> ----- ----- <u>할</u>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급식기관) ① ----- <u>노인-----</u> ---- <u>급식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한다.</u></p> <p>② <u>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급식기관에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
지법」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관, 「노인복지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 노인복지시설, 종교단체 등 급식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·법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자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운영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을 식재료 등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도점검) 구청장은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삭 제>

③ 급식기관은 -----  
-----  
-----  
-.

제7조(지도점검) -----  
----- 급식기관-----  
-----  
-----.

제8조(사업의 위탁) ①구청장은 노인급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포구 출연기관, 비영리법인,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구청장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

제8조 (생략)

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 
제9조 (현행 제8조와 같음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에  
해당하지 않음.

3. 미첨부 사유

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 :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김형신 (☎ 3153-8854)